

## 제목: 범죄자의 인권존중

학과:소방안전학부 학번:202211767 이름:남수현

### 1. 서론

요즘 날이 갈수록 많은 범죄자가 생김에 따라 범죄자 인권을 존중 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에 인권이 존중되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견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안양 어린이 유괴살인사건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

“살인자 등 강력범들이 잡혀가면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 찬 손을 가려주는 것이 인권위 때문이라는데 말이 안 된다.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데, 강력범들을 사형시켜서 그 짓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권위가 이를 막지 말라, 미성년자 성추행범 등 상습 성폭력 전과자에게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하는데 인권위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최근의 강력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만 옹호하지 말고 국민, 특히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내놓고 입장표명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sup>1)</sup>

이처럼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는 찬성하는 쪽에서 나의 생각을 써보려고 한다. 하지만 여론과 사람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들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내용에 설명하려고 한다.

### 2. 본론 1

위에서 말했듯 나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에 찬성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여도 모든 사람은 모두 동등하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될 수 있는 인권으로는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것이라는 뜻으로 모든 이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치사회학 용어인 천부인권 혹은 자연권이라고 한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에서 먼저 발표되었고, 이후 UN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하게 되면서 천부적 인권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이처럼 UN에서 인정한 천부인권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조금 침해해서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 1458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란 법을 만들어 피해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나라가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는 만큼 법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1) 박광우, “인권위는 범죄자 인권만 보호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담실>, 2008.04.17 수정, 2022.11.24 방문, <https://www.humanrights.go.kr/hrletter/08041/pop07.htm>.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공평하다. 따라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 법에 의존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본론 2

안양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에서 국민이 분노한 이유를 보면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솔직히 많은 사람이 사형을 시켜 완전히 국민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형제는 원시적인 형벌이라 생각한다. 고조선 8조법에 1법을 보면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라는 내용으로만 봐도 고조선부터 시행되던 것으로 매우 1차원 적이고 원시적인 형벌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미국 외 25개국만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사형집행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며 사형집행은 강력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엇갈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사형제를 없앤 후 44%가 감소하였지만, 미국의 경우 사형제를 부활시킨 후 63%가 감소하였다. 영국 또한 사형 폐지 후 60%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 감소한 쪽이 많지만, 사형제와 흉악범죄율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내지 못하였다. 감소한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사형제가 맞는 제도라 생각하는 이들에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 묻고 싶다. 만약 당신들의 가족들이 어떠한 실수로 사형을 받게 된다면 매우 비윤리적인 법에 대해 비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벌로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고, 범죄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존중하면서 피해자의 인권 또한 존중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4. 본론 3

마지막으로 만약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면 의견에 대한 반론을 해보려고 한다.

만약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존중하지 말아야 할 범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요즘은 여러 매체로 접할 수 있듯이 심신미약 등으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범죄자들이 많고 그게 법에 허점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살인을 저지른 것과 똑같이 사람을 죽였으나 술이나 그 사람의 정신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이 둘이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은 처벌과 존중 또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이 둘 모두 잘못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 경우는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지병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한쪽은 범죄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핑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많은 경우가 존재할 텐데 두 사람 중 술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모두 그 허점을 노려 형량을 줄이고, 인권을 존중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범죄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인권을 존중해야 하나를 생각하면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허점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말 것이다. 또한, 범죄자라도 분명히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그것을 모두 인정

해 줄 순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여러 상황이 다르고 많은 변수가 존재할 텐데 모두 같은 처벌을 하고, 똑같이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매우 불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 결론

흉악범죄자가 잘한 부분이 있어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같은 인격을 갖고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분 인권사상 등과 같은 사상으로 봤을 때 같은 사람의 인권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사형제도 또한 원시적인 형벌인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죄 때문에 존엄한 생명을 없애는 것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와 범죄율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는 바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흉악범죄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떠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세계의 나라들은 범죄자의 인권을 제안하는 쪽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 안전을 더더욱 생각하여 범죄 자체를 줄여야 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자발찌의 허점을 없애야만 하고 피해자 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각 나라의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일들을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